**마스크 생산설비 공급 계약서**

매수인 디에이치케이대도 주식회사 (이하 “갑”또는 위임자라 칭한다)와 매도인 (주)피에스에이치홀딩스 (이하 “을”또는 수임자라 칭한다)는 다음과 같이 공급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 [ 목 적 ]**

이 계약은 “갑”의 요청에 따라 “을”이 마스크 생산기계(이하 “기계”이라 함)를 공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 2조 [ 매매대상 ]**

“을”이 “갑”에게 공급하여야 할 기계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중국산 덴탈마스크 생산기계 (포장기 별도)

(구성: 메인성형기 1대 + 귀끈융착기 1대당 3000만원/VAT별도)

2. 스펙은 별도 첨부하기로 한다.

**제 3조 [ 매매대금]**

1. 매매대금은 마스크 생산기계1+1자동시스템 1대당 일금 삼천만원정 ( 30,000,000원정,부가세별도)으로 하여 총10대의 금액 일금 삼억원원정(300,000,000원정,부가세 별도)을 “갑”은 다음과 같이 “을”의 계좌에 지급하기로 한다.

1)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일금 오천만원정 (\ 50,000,000원정,부가세별도)을 지급한다.

2) 1월 12일 중도금으로 오천만원정 (\ 50,000,000 원정,부가세별도)을 지급한다.

3) 기계 설치 후 마스크납품계약 체결시 잔금 이억원정(\ 200,000,000원정,부가세별도)을 3회에 분할하여 지급한다.

“갑”이 지정하는 곳에 기계를 배송한후 “을”은 설치 및 시운전 교육을 실시 한다.

(설치는 “을”이 해당 공장의 사정에 맞게 설치하고, 전기시설 및 에어시설등의 부대시설은 “갑”이 하기로 한다. )

2. 만일 중도금이 위 일자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매 1일에 전액 5%의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갑”은 “을”에게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 4조 [ 납기 ]**

1.본 기계의 납기는 30일로 하며, 공휴일은 제외한다.

제3조 1-2)항과 관련하여 선적 전 중도금 지급 후 “을”은 7일 이내로 선적하는 것으로 한다.

2. 제3조 2항과 관련하여 중도금이 지급되었으나 7일이상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을”은 “갑”에게 전액 반환한다.

3. 금형의 변경 또는 천재지변, 수출국의 규정변동, 운송스케줄변동 등의 사정에 의해 납기계획이 변경시 쌍방이 협의하여 납기를 조율할 수 있다.

**제 5조 [ 운송 및 상품 검수 ]**

“을”의 운송책임은 “갑”의 설치공장까지 내륙운송비용 포함(제주도,울릉도 제외)이며, “갑”의 공장에서 구조상 크레인사용등 별도비용이 발생시 “갑”이 부담하기로 하고, “갑”은 공급받은 기계에 대하여 검수를 하여야 하며 품질상의 하자 또는 수량 부족을 발견한 때에는 인도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위 기일내에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갑”은 “을”에 대해 제품의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 등을 이유로 한 일체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제 6조 [ 위험부담 ]**

위 기계에 대하여 제3조의 인도 기일까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기계가 훼손 혹은 멸실 되었을 때는 “을”은 대금의 지급을 면한다.

**제 7조 [ 인도 및 소유권 이전 ]**

기계의 소유권은 “갑”이 제3조에 규정된 대금을 완납한 시점에 “갑”에게 이전되며,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 설비에 대한 모든 위험은 “갑”에게 이전된다. 따라서 기계가 “갑”에게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갑”이 매매대금을 완납하지 않았다면 소유권은 여전히 “을”에게 남아 있게 된다.

**제 8조 [ 양도 금지 ]**

“갑” 또는 “을”은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이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 9조 [ A/S기간 및 방법 ]**

1. A/S기간은 인도일 이후 기본12개월로 하나, 1일 16시간 이내 가동 시 초음파관련부품은 3개월 무상AS기준으로 하기로 한다.

2. 귀끈융착기초음파1세트, 성형기1차/2차 커팅롤러 각1개,귀끈가위1개,코편절단롤러1개 등의 예비부품은 기계납품시 같이 공급하기로 한다.

3. 위1항의 초음파관련부품은 3개월이후 유상A/S로 전환되고, 비용은 출장비 30만원에 부품실비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제 10조 [ 조세 공과금 ]**

이 계약과 관련하여 각 당사자에게 부과되는 세금 및 기타 공과금은 각자 부담한다. 단, 기간을

단위로 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나 공과금의 경우에는 제3조의 인도 일을 기준으로 하여 기간 비율

에 따라 “갑”과 “을”이 분담하기로 한다.

**제 11조 [ 계약 의 해제, 해지 ]**

1. “갑” 또는 “을” 양 당사자 중 어느 일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은 서면 통지로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이 계약의 각 조항을 위반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시정요구를 받고도 30일 이내에 이를 시정

하시 않는 경우

2) 제3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하여 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어렵게 되거나 파산, 해산, 회사정리, 화의 기타 이와 유사한 신청을 당하거나 스스로 신청한 경우

3) 발행 또는 배서한 어음, 수표 등이 부도처리 되는 경우

2. 전 항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기 발생한 권리의무 및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12조 [ 계약 의 변경 ]**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이를 변경하고 그 변경내용은 변경한 날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 13조 [ 특약 사항 ]**

상기 계약 일반사항 이외에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일반사항과 특약사항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1. 본 기계의 설치후 충분한 테스트를 위해“갑”은 원부자재를 충분히 준비하여 테스트에 차질이 없게 하여야 하며, 원부자재의 규격은 “을”과 협의하기로 한다.

2. 국내 관세 기타 부담금의 변동시 기계공급가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

3. 기계설치후 1시간 연속 가동시 최하 분당50장이상은 생산되어야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5. “갑”은 위 3조의 매매대금과 위 1항의 비용을 계약즉시 “을”이 지정하는 아래의 계좌로 지급하기로 한다.

국민은행 598037-01-010101 예금주 (주)피에스에이치홀딩스

**제 14조 [ 분쟁 해결 ]**

1. 이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 있거나, 이 계약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일반 상관례에 따라 “갑”, “을” 간의 별도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한다.

2.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갑”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재1심 관할법원으로 하여 소송으로 해결하기로 한다.

이상의 사항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상호 기명날인 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계약 일자 : 2021년 01월 08일

(갑)

회 사 명 : 디에이치케이대도 주식회사

주 소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오리산단3로 10 101동 B호

대 표 자 : 대표이사 도 상 우 (인)

(을)

상 호 : 주식회사 피에스에이치홀딩스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교보증권빌딩 10층

성 명 : 대표이사 박 강 원 (인)